



## 인도네시아 Tax Info 2023 년 1 월

### HPP 법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세 시행령: 납세자를 위한 일부 중요사항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1 년 10 월 29 일, 개정세법에 관한 법률 2021 년 제 7 호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고 제정되었음. (2021 년 10 월 [Tax Info](#) 및 2021 년 11 월 [Tax Alert](#) 참조). 해당 법령은 아래 관련 세법을 규정한다:

- 소득세법;
- 부가세법
- 국세기본법; 및
- 소비세법.

최근 정부는 HPP 법령에 따른 아래의 시행령을 발표했음:

- 소득세 – 정부령 2022 년 55 호 (PP-55)
- 부가세 – 정부령 2022 년 44 호 (PP-44)
- 부가세 – 정부령 2022 년 49 호 (PP-49); 및
- 국세기본법 – 정부령 2022 년 50 호 (PP-50)

#### In this issue:

1. [Implementing Regulations on Income Tax and VAT under HPP Law: Some Significant Developments for Taxpayers](#)

#### Customs Focus:

2. [Updates on Changes to Procedures for Import of Intangible Goods](#)

본 Tax Info 는 PP-55, PP-44 및 PP-49 에 대한 설명이며 PP-50 은 다음 호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 PP-55 – 소득세

PP-55 는 2022 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되며 아래 규정을 폐지함:

- 당해 연도 소득세의 계산 및 정산에 관한 정부령 2010 년 94 호 제 2A 조 (정부령 2021 년 9 호에 의해 최종 개정됨) (PP-94);
-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정 원조 및 기부금에 관한 정부령 2009 년 18 호 (종교 기부금에 대한 zakat 포함);
- 특정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PP-23 에 따른 최종소득세)에 관한 정부령 2018 년 23 호 (PP-23) ([Tax Info July 2018](#) 참조);
- COVID-19 처리와 관련된 소득세 혜택에 관한 정부령 2020 년 29 호 제 10 조 ([Tax Alert June 2020](#) 참조); 또한
-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납세자의 법인세율 감면에 관한 정부령 2020 년 30 호 ([Tax Info June 2020](#) 참조).

이번 호에서는 2022 회계연도(FY2022)부터 사용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비(BIK)의 과세에 대한 설명, 탈세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 내용연수가 20 년 이상인 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 변경, 최종 분리과세 개정과 같이 납세자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PP-55 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 BIK 의 소득세 처리

PP-55 에 따라 BIK 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현물급여 (natura): 음식, 음료 등 금전 이외의 재화 형태의 보수. 현물급여는 시장 가치에 따라 평가됨; 및/또는
- 편익 (kenikmatan): 시설 및/또는 서비스(예: 주택, 교통 수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형태의 보수. 편익은 사용자가 지불/지불했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PP-55 는 BIK 에 대한 직원의 납세의무와 사용자의 세금 공제 관점에서 BIK 처리를 설명한다.

### 직원의 납세 의무

2022 회계연도부터 BIK 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과세 대상 소득이다. 단, 아래 BIK 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음료:
  - 직장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음식 및/또는 음료;
  - 업무 특성상으로 인해 직장에서 음식 및/또는 음료 제공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을 위한 음식 및/또는 음료 쿠폰; 및
  - 모든 직원을 위한 식품 및/또는 음료의 재료 (특정 한도까지).

These regulations will require immediate attention and follow-up by taxpayers as they will have potential impact on their tax obligations.

- 국세청(DGT)이 승인한 아래 형태의 외딴 지역에 소재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용자 작업장의 시설, 인프라 및/또는 편의
  - 주택을 포함한 숙박시설;
  - 의료 서비스;
  - 교육;
  - 예배시설;
  - 골프, 파워보트, 경마, 패러글라이딩 또는 모터스포츠를 제외한 체육시설; 및
  - 업무수행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한 교통시설.
- 업무수행에 필요한 BIK:
  - 유니폼;
  - 안전 장비;
  - 직원을 위한 통근서비스
  - 승무원의 숙박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및
  - 보건부가 결정한 풍토병, 전염병 또는 국가 재해 처리를 위해 받은 BIK (예: 백신 또는 바이러스 탐지 도구).
- 국가, 주정부 또는 마을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특정 BIK; 및
- 특정 제한이 적용되는 기타 BIK.

PP-55 는 직원의 BIK 소득세 처리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 FY2022 가 2022 년 1 월 1 일 이전에 시작하는 (예: 회계연도가 2021 년 10 월 1 일부터 2022 년 9 월 30 일까지인 경우) 고용자의 경우 2022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사이 해당 연도에 제공된 BIK 에 대해 제 21 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BIK 를 받는 직원은 해당 소득세를 납부/신고할 의무를 진다;
- FY2022 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예: 회계연도가 2022 년 4 월 1 일부터 2023 년 3 월 31 일까지인 경우) 고용주의 경우 FY2022 시작부터 2022 년 31 일 사이에 제공된 BIK 에 대한 제 21 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이 해당 소득세 정산할 의무를 짐; 또한
- 고용자는 2023 년 1 월 1 일부터 직원에게 제공되는 BIK 에 대한 제 21 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 고용자의 세금 공제

소득세법 제 6 조에 의거 소득 획득, 수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BIK 는 FY2022 부터 고용자의 세금 공제 대상임. PP-55 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FY2022 가 2022 년 1 월 1 일 이전에 시작하는 경우 2022 년 1 월 1 일부터 제공된 BIK 는 공제 가능함; 및
- FY2022 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 BIK 는 FY2022 시작 시점부터 공제됨.

BIK 의 과세 관련 PP-55 가 정한 두 가지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이 수령인의 소득세 대상인 경우 관련 비용은 해당 소득 지급자에게 손금 항목이 됨 (과세 공제 원칙); 또는

- 소득이 수령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비용은 소득 지급자에게 손금 불산입 항목임 (비과세-비공제 원칙).

상기 원칙에 의거 BIK는 직원에게 과세 대상인 경우 경우 고용자에게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됨. 다만 PP-55에는 일부 불일치 사항이 존재함. 예를 들어, 특정 BIK가 고용자의 소득 획득, 수집 또는 유지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 고용주가 직원의 파워 보트 비용이나 직원 자녀의 학비를 지불하는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BIK는 이론적으로 고용자에게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에게는 과세 대상인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지침은 없다.

## 조세회피 방지

PP-55에 의거 재무부 장관은(MoF) 다음을 통해 조세회피 방지 권한을 갖는다:

-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규정(CFC);
- 수익/비용 재분류 또는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재분류;
- 적법한 영업실질이 없는 제 3자를 통하여 대출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함;
- 판매가 조세 피난처 관할 구역에 설립된 회사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실제로 주식을 판매하는 당사자를 결정함;
- 고용자가 해외에 위치한 납세자의 회사에 소득을 비용으로 정산하는 개인 납세자의 소득 재결정;
- 동종업계에 비해 영업이익이 적거나 5년 이상 상업적 판매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 영업손실을 신고한 경우 납부할 소득세를 재산정
- 차입비용의 공제 제한; 및
- 납세자가 복합파생상품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경우 소득세 재산정.

법에 따라 납세자는 거래를 수행하는 당사자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함. PP-55에 따라 이는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계열사가 거래의 상대방과 가격을 결정하는 제 3자간의 간의 거래에도 적용됨.

아래의 경우 DGT는 수익과 비용을 재결정할 권한을 가짐:

- 납세자가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가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닌 경우.

DGT는 납세자의 수익, 비용 또는 세액 재결정/재산정시 실질과세 원칙을 준수한다.

## 다른 조세 관할 구역과의 재정 관련 협력

DGT 는 조세 관련 아래와 같은 쌍방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 세원 침식 및 이익 이전(BEPS)을 방지 관련 조세 조약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 조세 정보 교환 협약;
- 조세 문제에 대한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협약;
- 세무 당국 간의 쌍방 또는 다자간 합의; 및
- 경제 및/또는 BEPS 의 디지털화 관련 조세 문제 해결 협약.

##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HPP 법은 소득세법의 감가상각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음:

- 내용 연수가 20 년 이상인 영구 건물은 20 년 기간 또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내용 연수에 걸쳐 동일한 월 금액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음; 또한
- 20 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20 년 동안 정액법 또는 이중 체감법을 사용하여 상각할 수 있음.

PP-55 는 FY2022 이전에 소유 및 활용되고 회계 목적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대신 20 년 기간 감가상각되는 건축(또는 무형자산)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제공한다. FY2022 말까지 DGT 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PP-55 는 이러한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방법의 예를 제공한다.

## PP-23 에 따른 특정 납세자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PP-23 에 의거 단일 회계연도의 총소득이 IDR 48 억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납세자에게는 0.5%의 최종 소득세율이 적용됨.

다음 PP-23 조항은 일반적으로 PP-55 에서 일부 추가 사항과 함께 다시 설명됨:

- 마을 소유 기업(Badan Usaha Milik Desa)과 공동 마을 소유 기업(Badan Usaha Milik Desa Bersama)은 최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최종 소득세 대상자 목록에 개별 회사(Perseroan Perorangan)가 추가됨; 또한
- 본 조세 제도 하의 특정 개인 납세자의 경우 총수입의 기초 IDR 5 억은 과세 대상이 아님.

최종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됨:

- 개인 납세자의 경우 7 년;
- 법인 (협동조합, CV(Commanditaire Vennootschap), 회사, 마을 소유 기업, 공동 마을 소유 기업 또는 개별 기업) 납세자의 경우 4 년; 및
-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 형태의 법인 납세자의 경우 3 년.

PP-55 가 발효된 후 조세 목적으로 등록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등록된 회계 연도부터 최종 소득세가 적용된다. PP-55 가 시행되기 전에 조세 목적으로 등록된 마을 소유 기업, 공동 마을 소유 기업 및 개별 기업의 경우 최종 소득세는 PP-55 가 발효되는 납세자의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다음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 PP-23 이 발효되기 전에 조세 목적으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경우 최종 소득세는 FY2018 부터 해당 최종 소득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납세자가 더 이상 최종 소득세를 납부할 자격이 없을 때까지 적용됨;
- PP-23 시행 이후 조세 목적으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등록된 회계연도부터 해당 최종 소득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세자가 더 이상 납세자가 아닌 때까지 최종 소득세가 적용됨; 또한
- PP-55 가 발효되기 전에 최종 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PP23 에 따른 해당 최종 소득세 기간이 있더라도 PP-55 에 따른 최종 소득세를 납부할 자격이 없다 (예: 총 소득이 IDR 48 억 한도를 초과함).

## 기타 사항

일반적으로 PP-55 에서 설명하는 다른 주제에 대한 조항은 재무부가 발행한 기존 규정과 동일함. 단, 납세자는 규정의 전문을 검토하여 현재 또는 향후 사업계획의 잠재적 영향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PP-44 – 부가세

PP-44 는 2022 년 12 월 2 일 발행 즉시 발효되었으며 이전 부가세 규정, 즉 2012 년 규정 번호 1 을 폐지시킴 (2021 년 규정 번호 9 로 개정됨) (PP-1). PP-1 의 시행령은 PP-44 의 조항에 배치하지 않는 한 유효함.

PP-44 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부가세 변경 사항이 포함됨.

조항	PP-1 에 따른 규정	PP-4 에 따른 규정
부가세 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tanggung jawab renteng)	<p>아래의 경우 연대 책임이 적용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가세는 판매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또는</li> <li>구매자는 관련 부가세가 판매자에게 지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음</li> </ul> <p>부가세 납부에 대한 공동 책임은 과소납부 세액 확정 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 발행을 통해 부과되었음.</p>	<p>아래의 경우 연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매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음; 또한</li> <li>구매자는 부가세가 판매자에게 지불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음</li> </ul> <p>SKPKB 또는 추가 과소 납부 세액 확정 통지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를 이용한 자진신고를 통해 연대 책임이 부과됨.</p>
다른 당사자를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	해당 없음	<p>국세기본법 제 32A 조는 재무부가 전자 시스템(PMSE(Penyserahan Melalui Saluran Elektronik))을 통한 거래를 포함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원천징수자 또는 징수자로 국내외 당사자(지정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p> <p>부가세 목적을 위해 PP-44 는 지정된 당사자가 PMSE 를 포함한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당사자임을 명확히 함.</p> <p>지정 당사자는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에 주소를 두고 자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인도네시아 세관 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상인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개인 또는 법인); 또는</li> <li>국내 또는 해외 PMSE 공급자</li> </ul> <p>고객이 부가세법 제 16A 조에 따라 부가세 징수자인 경우 부가세 징수 의무는 지정 당사자에게 있음 (제 16A 조에 따른 부가세 징수원 대신).</p>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자가 사용	<p>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자가 사용은 회사 자체 또는 그 경영진 또는 직원의 이익을 위해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자체 생산된 상품 및 기타 상품을 모두 포함함.</p> <p>PP-1 은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자가 사용을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했음.</p>	<p>PP-44 는 무료 선물을 어떤 이름이나 형태로든 지불이나 보상 없이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p> <p>PP-44 는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자가 사용 또는 무료 선물에 대한 부가세 처리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그것들은 MoF 규정에 의해 추가로 규제될 것임.</p>

조항	PP-1 에 따른 규정	PP-4 에 따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적인 목적; 또는</li> <li>• 소비</li> </ul> <p>PP-1 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생산 목적으로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자가 사용하기 위해 부가세 미징수 혜택을 제공했음.</p>	
사업 활동의 정의	PP-1 에 사업 활동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	<p>PP-44 는 사업 활동을 운영 및 비운영 활동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모든 인도로 정의함.</p> <p>영업활동이란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과 투자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기타 활동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및 사건을 말합니다.</p> <p>비영업 활동은 위의 영업 활동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임.</p>
담보물품의 공급	해당 없음	과세 대상 상품이 대출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 사리아 자금 조달 방식 포함) 부가세 대상이 아님. 그러나 채무자가 대출금을 불이행하고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과세 대상 상품을 채권자가 매각한 경우 거래에 부가세가 부과됨.
경매를 통한 과세 상품 공급	PP-1 은 PP-44 보다 경매를 통한 과세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조항을 제공했음.	PP-44 는 MoF 규정에 의해 추가로 규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음.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부가세를 징수 및 납부)	해당 없음	<p>HPP 법은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일부 후속 MoF 규정이 발표되었음 (<a href="#">Tax Info April 2022</a> 및 <a href="#">Tax Info May 2022</a> 참조).</p> <p>PP-44 는 다음과 같이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이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부가세 혜택(부가세 미징수/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세는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계산됨</li> <li>○ 계산된 부가세는 적절하게 면제/징수되지 않음</li> <li>○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li> </ul> </li> <li>• 최종 부가세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 납품이 본사와 지점 또는 지사 간에 수행되는 경우 최종 부가세는 0 을 부가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여 징수됨.</li> </ul>
판매/공급 가격에 이미 포함된 부가세 계산	PP-1 은 부가세 및/또는 사치품 판매세(LST)가 판매/공급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 계산 방법을 제공했음.	PP-44 는 2022 년 4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부가세 세율인 11%를 수용하기 위해 계산 방법을 업데이트함 (늦어도 2025 년 1 월 1 일 이후 부터는 부가세율 12% 적용).

조항	PP-1 에 따른 규정	PP-4 에 따른 규정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이외의 통화로 거래	IDR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세 세금 계산서 작성일에 적용되는 재무부 결정서(KMK rate)에 의해 결정된 환율을 사용하여 IDR 로 변환되어야 함.	IDR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세 세금 계산서 또는 부가세 세금 계산서로 처리되는 기타 문서의 발행 만기일에 적용되는 KMK rate 를 사용하여 IDR 로 변환되어야 함.
사업확장 및 분할의 정의	PP-1 은 사업 확장을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고 기존 사업체를 청산하지 않고 기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의 일부를 새로운 사업체로 이전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를 둘 이상의 사업체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의했음.	PP-44 는 부가세 목적을 위한 사업 확장 및 분할이 유한 책임 회사 법률(Undang-Undang Perseroan Terbatas)에 정의된 분사를 참조해야 함을 명확히 함.
주된 납세지 지정	주된 납세지 지정에 따른 부가세 납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 (PKP))는 선택한 주된 부가세 납세지에서 영업관리를 수행해야 함.	주된 납세지 지정에 따른 부가세 납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 (PKP))는 영업 관리 외에도 재무활동을 주된 납세지에서 수행해야 함.
3 개월 이상 늦게 발행된 부가세 세금 계산서 처리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에 발행된 부가세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로 간주되지 않음.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에 발행된 부가세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여전히 부가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함.  이 조항은 부가세 세금 계산서로 처리되는 기타 문서에도 적용됨.
적용된 부가세율 결정	해당 없음	부가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가세율 변경 이전에 부가세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고 부가세 세금 계산서도 변경일 이전에 작성된 경우 이전 부가세율을 사용해야 함.</li> <li>부가세 납부 기한이 부가세율 변경일 이후이거나 부가세 세금 계산서가 변경일 이후에 작성된 경우 새로운 부가세율을 적용해야 함</li> </ul>

**PP-49 – 부가세 혜택**

HPP 법에 의해 도입된 주요 간접세 변경 사항 중 일부는 부가세 처리 및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혜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HPP 법은 변경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만 제공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2022 년 12 월 12 일 정부는 시행령 역할을 하는 PP-49 를 발행했다. PP-49 는 발행 즉시 발효되며 2022 년 4 월 1 일부터 수입 및 기타 공급에 소급 적용되고 2022 년 4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수입 및 공급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음.

PP-49 는 다음 정부령을 폐지함:

- 특정 과세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세 면제에 관한 법률 2000 년 146 호 (법률 2003 년 38 호로 개정됨) (PP-146);
- 특정 전략적 과세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세 면제에 관한 법률 2015 년 81 호 (법률 2020 년 48 호로 개정됨) (PP-81) ([Tax Info October 2020](#) 참조);

- 정수 공급의 부가세 면제에 관한 법률 2015 년 40 호 (법률 2021 년 58 호로 개정됨) (PP-40); 및
- 특정 운송 및 관련 서비스 수입 및 공급의 부가세 미징수 혜택에 관한 법률 2019 년 50 호 (PP-50/2019) ([Tax Info July 2019](#) 참조).

### 부가세 혜택 (부가세 면제 및 부가세 미징수 혜택)

PP-49 는 부가세 혜택을 다음 범주로 분류함:

- 특정 과세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또는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
- 부가세가 면제되는 특정 전략적 과세 물품의 수입 및/또는 공급;
-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도네시아 세관 지역에서 특정 전략적 과세 서비스 제공 및/또는 역외 전략적 과세 서비스 이용;
- 특정 전략적 과세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또는 공급 및/또는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에서 특정 역외 전략적 과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부가세 미징수 혜택; 및
-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과세 상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미징수 혜택.

### 특정 과세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또는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

PP-146 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부분의 과세 상품 및 서비스 유형은 다음 범주로 분류됨:

- 다음 과세 상품의 수입 및/또는 공급:
  - COVID-19(신규) 및 소아마비 백신
  - 특정 일반 교과서, 경전 및 종교 교과서; 및
  - 국가재난 관리를 위해 특정 정부기관이 수령하는 과세 상품; 또한
- 다음과 같은 과세 서비스 제공:
  - 예비 시설 건축을 위한 건설 서비스
  - 국가재난 피해자를 위한 건물에 대한 특정 건설 서비스 (신규); 및
  - 특정 정부기관이 국가재난(신규)을 처리하면서 받는 과세 서비스 (건설 서비스 제외).

상기 범주에 따른 부가세 면제 혜택은 자동으로 제공된다. 즉, 부가세 면제 증명서(surat keterangan bebas(SKB))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부가세가 면제되는 특정 전략적 과세 상품의 수입 및/또는 공급

이전 PP-81 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었던 특정 전략적 과세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또는 공급은 다음과 같이 PP-49 의 아래 범주에 포함된다.

- 예비 부품을 제외한 통합 건설 당사자 (즉, 통합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EPC) 회사)에 의한 특정 기계 및 공장 장비의 수입 (자세한 내용은 MoF 규정에 따라 규제됨);
- 해양어업 부문의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는 특정 상품; 및
- 은 과립 또는 은괴 형태의 은 수공업품 원료.

HPP 법 이전에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HPP 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 다음 상품은 부가세 면제 대상임:

- 쌀·콩·옥수수 등 공공에 필수적인 기본 물품
- 원유 및 지열 에너지와 같이 자원에서 직접 추출되는 채광 또는 시추 제품(석탄 제외)

PP-40 에 따라 제공했던 리필 음용수(air minum isi ulang)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PP-49 에 따라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무기 및 지형 장비와 같이 위의 첫 번째 범주에 속하지 않는 PP-146 에 따른 일부 유형의 과세 상품은 전략적인 과세 대상 상품으로 재분류되며 이 범주에 따라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대통령 전용차량과 일부 설탕류 등이다.

부가세 면제 혜택은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에 따라 자동으로 제공되거나 SKB 를 요청하여 제공된다.

###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도네시아 세관 지역에서 특정 전략적 과세 서비스 제공 및/또는 특정 역외 전략적 과세 서비스 이용

이 범주는 다음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됨:

- 의료/보건 서비스;
- 사회 서비스;
- 우표를 이용한 우편물 배달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보험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비상업적 방송 서비스;
- 수륙의 공공 교통 서비스 및 국제항공 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내항공 서비스;
- 노동 서비스;
-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 서비스;
- 우편환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
- 특정 적격 아파트 임대; 및
- 경계 데이터, 지형도, 수로도 및 항공 사진 제공과 관련하여 국방부 또는 국군이 받는 특정 서비스.

이 범주에 나열된 대부분의 서비스는 HPP 법 제정 이전에는 비과세 서비스였지만 현재는 과세 서비스로 처리된다.

### 특정 전략적 과세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또는 공급 및/또는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에서 특정 역외 전략적 과세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부가세 미징수 혜택

이전에 PP-50/2019 에 따라 교통 산업에 제공된 부가세 미징수 혜택이 이제 PP-55 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혜택에 적절한 과세 상품 및 서비스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과세 상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미징수 혜택

과세 상품의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부가세가 부과되어 징수되거나 부가세 미징수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됨:

- 공공 예배, 자선, 사회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한 특정 선물;
- 과학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또한
-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정 상품

부가세 미징수 혜택에 따라 수입 및 공급되는 특정 과세 상품은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거나 (일부 예외 있음) 처음 의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4 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업자/구매자는 국고에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를 정산해야 한다.

### 매입 부가세 공제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급의 경우 관련 매입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다.

부가세 미징수 혜택이 적용되는 공급의 경우 관련 매입 부가세가 공제될 수 있다.

### 경과규정

PP-49 에 따른 규정은 2022 년 4 월 1 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및 공급에 적용된다.

2022 년 4 월 1 일부터 12 월 11 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가 이미 징수 또는 지불된 수입 및 공급의 경우 다음으로 처리됨:

- 판매자/서비스 제공자 경우
  - 면제되어야 할 공급에 대해 부가세가 징수된 경우 징수된 부가세는 국고로 송금되어야 하며 관련 매입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 및
  - 징수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았어야 할 경우 징수된 부가세는 국고로 송금되어야 하며 관련 매입 부가세는 공제 가능함
- 수입업자, 구매자 또는 서비스 수령인의 경우
  - 수입업자, 구매자 또는 서비스 수령인이 PKP 인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과하는 부가세는 공제 가능함; 및
  - 수입업자, 구매자 또는 서비스 수령인이 PKP 가 아닌 경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과하는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야 할 부가세임

### 기타 사항

PP-146, PP-81 및 PP-50/2019 에 대한 시행령은 PP-49 와 충돌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PP-49 는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과세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제공한다. 기업은 PP-49 를 자세히 검토하여 해당 규정이 상황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관세 포커스

### 무형 자산 수입 절차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

재무부는 사용을 위한 수입품의 반출에 관한 지침에 관한 규정 번호 190/PMK.04/2022(PMK-190)를 발표했다. PMK-190 은 이전 규정 번호 228/PMK.04/2015(PMK-228)를 폐지하고 무엇보다도 디지털 상품 수입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MK-190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PMK-190 clarifies the procedures of import of intangible goods such as software and other digital goods.

#### 1. 무형자산 수입품 공급

PMK-190 은 이제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상품과 같은 무형자산 수입품의 공급이 전자 전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전에는 PMK-228 하에서 무형자산의 수입을 신고하는 제도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독립형 수입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

#### 2. 무형자산 수입신고(이하 "PIB") 시 기재사항

- a. 관세의무를 정산하는 세관관서;
- b. PIB 유형;
- c. 수입 유형;
- d. 지불 유형;
- e. 위탁자의 데이터;
- f. 수입자 데이터;
- g. PPJK 의 데이터(PPJK 에 위임된 경우)
- h. 계산서;
- i. 거래;
- j. 외환;
- k. NDPBM;
- l. FOB;
- m. CIF 가치;
- n. 관세 및 상품 설명;
- o. 원산지; 및
- p. 수입 관세, 소비세, 부가세, LST 및 소득세 징수 유형

### 3. 무형자산 수입시 관세청산 및 PIB 제출

무형자산 수입관세의무 정산은 대금지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PMK-190 은 2023 년 1 월 14 일부터 발효된다.

\*\*\*\*\*

##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Technology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Budi Prasongko**  
bprasongko@deloitte.com

**Business Tax**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Muslimin Damanhuri**  
mdamanhuri@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mailto: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http://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